



일본어교실에 참가해 보면 어떨까요!

(키타구 일본어교실 안내)







● **키타구 중앙공원 문화센터** (키타구 주조다이 1-2-1) (월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휴관)

일본어교실 일람

(교실의 특징:활동시간과 일본어 실력에 따라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20년에 걸쳐 약 3000명에게 일본어를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키타구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 재학 중인 분이라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 1회 100엔

일시	단체명	내용	형태	난이도	연락처와 선생님의 메시지
화(19시~21시) 수(10시~12시) 금(10시~12시)	국제교류 니혼고노 나까마	자유교재 회화	난이도별 그룹별 개 인지도	「입문」 「초급」 「상급」	 외국인과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회화를 나누는 등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카와타 TEL 03-3900-4586
금 (13:30 ~ 15:30)	조이너스 일본어 클럽	자유교재 회화	그룹별 개인지도	「입문」 「중급」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더 일본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야마다 TEL 090-8173-2403
토 (10시~12시)	아스카 일본어 패밀리	자유교재 회화	난이도별 그룹별 개인지도	「입문」 「초급」 「상급」	 현재 자원봉사자가 학습자에게 맨투맨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가고자 합니다. 카나자와 TEL 03-3912-8283
토 (14시~17시)	일본어 살롱	자유교재 회화 자유활동 (실비)	전체	「초급」 「상급」	 일본어 지원과 문화교류를 통해 즐겁게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가이 TEL 03-5249-5787



공지:중앙공원 문화센터에서는 봄, 가을 시즌에 각각『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본어의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회화, 그리고 밖에 나가 실천학습도 실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키타구 뉴스·중앙공원 문화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03-3907-5661)

● **아카바네 문화센터** (키타구 아카바네니시 1-6-1-301 03-3906-3911) (매월 3번째 화요일/연말연시 휴관)

일본어교육학습회(교실의 특징:1999년부터 일본어를 수준별로 주 2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일본어교사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회금:없음 ※회비:3000엔 (월 4회)		교사들의 메시지:
요일:수, 금요일/9:30 ~ 11:30		바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사용해 기초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능력 시험을 위한 공부도 지도합니다.
장소:아카바네 문화센터		
연락처:03-3909-2263 다나카		

● **키타구청의 외국인상담안내** (2012년도부터 변경 있음)

요일:중국어-매주 화, 목요일 (오후 1~4시) 영어-매월 2, 4째 화요일(오후 1~4시)

(2012년 4월 1일부터 2째 화요일만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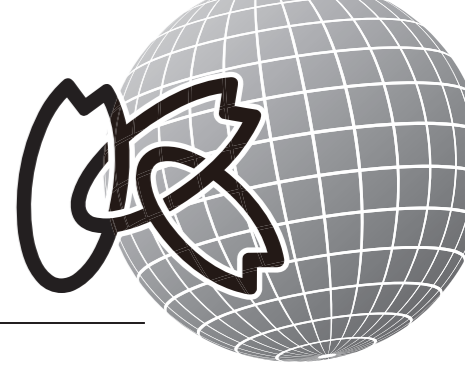
장소:키타구청 제1청사 3층 2번 창구

예약처:03-3908-1101



北区国際交流紙 “키타구 국제교류지”

글로벌 싱킹



No. 42 2012년 3월

편집·발행:키타구(北區)청 총무과 총무계(국제)
東京都北区王子本町(도쿄도 키타구 오지혼초) 1-5-22 〒114-8508 TEL 3908-9308 FAX 3905-3423

외국인등록제도가 2012년 7월 9일(월)부터 변경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2012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입국관리법(이하 “입관법”) 및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예 따라 중장기에 걸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되며 외국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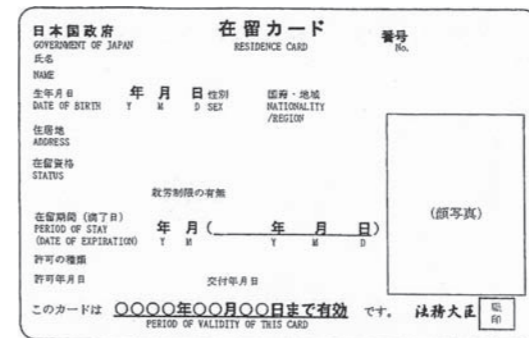
게도 주민표가 작성되며 주민표 사본이 교부되게 됩니다. 또, 종전의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1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관한 내용

- **체류카드 작성 대상자**
체류자격을 가지며 3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자(단기체재, 외교 및 공용(公用)의 체류자격은 제외)
★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영주자는 교부일로부터 7년간. (16세 미만인 자는 16세의 생일) 영주자 이외의 자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16세 미만인 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이 빠른 자까지.)
★ 체류기간이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특별영주자증명서 작성 대상자**
특별영주자
★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7회째의 생일까지. (16세 미만인 자는 16세 생일)
- **주민표 작성대상자(표1 참조)**는 현재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일정 기간은 현재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간주하므로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체류카드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 특별영주자증명서는 원칙, 다음 회의 확인(전환)신청기간의 개시 시기인 생

- 일까지 유효합니다.
- 체류카드 등의 사전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카드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카드는 도쿄입국관리국,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키타구 호적주민과 외국인등록계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부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 **간주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하는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상한이 3년에서 5년(특별영주자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됩니다.
- 새로운 제도 시작에 따라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원표의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주력, 성명 등의 변경이력, 상륙연월일 등, 외국인등록원표의 내용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법무성에 청구해 주십시오.
★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카드입니다.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2 주민표에 관한 내용

● 주민표 작성 대상자(표1)

①	중장기 체류자 (영주자 포함)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자나 단기체제, 외교,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이외의 체류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②	특별영주자	입관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③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임시체제허가자	입관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 등을 탄 외국인이 난민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출 때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받은 자(일시비호허가서가 교부됩니다) 입관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체재자가 난민인정을 신청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임시로 일본 체재를 허가받은 자(임시체재허가서가 교부됩니다)
④	출생에 따른 경과체 재자 또는 국적상실 에 따른 경과체재자	출생 또는 일본국적 상실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입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기재되는 내용

성명(통칭명도 포함), 생년월일, 성별, 이전 주소(개정법 시행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 기재됩니다.), 외국인 주민이
된 날,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국적 및 지역, 제30조 45규정 구분(표1의 ①~④의 구분), 체류자격, 체류카
드 번호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번호, 체류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 인감등록에 관해

주민표가 작성된 자(표1 참조)로 이미 인감등록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인감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 인감등록은 말소되며 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를 할 수 없게 됩니
다.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는 여권 사본 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사인증명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세한 내
용은 제출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 수속 장소가 변경됩니다

① 주소/세대주/관계 등의 변경 → 기타구청

※ 전입 및 전출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성명/생년월일/국적 등의 변경,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변경갱신,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 등, 체류카드 재교부 → 도쿄입국관리국

※ 특별영주자의 수속은 지금까지와 같이 기타구청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의 기타구청 수속창구>

① 주소/세대주/관계 등의 변경

▶ 王子区民事務所: 王子本町 1-2-11 (第二庁舎 1階)

▶ 오우지구민사무소 오우지혼초 1-2-11 (제 2 청사 1 층)

☎ 3908-8745

▶ 赤羽区民事務所: 赤羽 1-67-62

▶ 아카바네구민사무소 아카바네 1-67-62

☎ 3901-2693

▶ 滝野川区民事務所: 西ヶ原 1-23-3 (滝野川会館内)

▶ 타키노가와구민사무소 니시가하라 1-23-3 (타키노가와회관 내)

☎ 3910-0141

② 특별영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변경 및 특별영주 허가에 관한 내용

▶ 外国人登録係: 王子本町 1-2-11 (第二庁舎 1階)

▶ 외국인등록계 오우지혼초 1-2-11 (제 2 청사 1 층)

☎ 3908-8740

<문의처>

○ 새로운 제도에 관한 내용 및 체류카드의 사전교부신청에 관해

▶ 法務省入国管理局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법무성 입국관리국 외국인 체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 0570-013904 (IP 전화, PHS, 해외에서 통화시에는 03-5796-7112)

○ 주민표에 관한 내용 및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사전교부신청에 관해

▶ 北区 外国人住民制度改正電話相談窓口
키타구 외국인주민제도개정 전화상담창구

☎ 03-3908-1166

(전화접수시간은 평일 8:30 ~ 17:15 까지)



※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 총무성 홈페이지(주민표에 관한 내용)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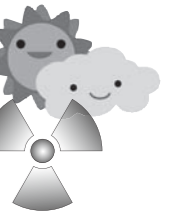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선에 관해

1 현황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1년이 경과하려
고 합니다. 지금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 이내
는 경계구역으로 정해져 각종 오염제거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도내의 방사선량은 종종 국
소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지점이 확인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기타구의 대책

키타구에서는 구내의 방사선량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6월 하순부터 공간방사선량의 측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방사선량의 국내평균치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건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또,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의 안전과 안심
을 고려해 매시 0.25마이크로시버트를 키타구의 대책 기
준수치로 삼고 있습니다.

○ 내용

놀이터의 모래사장 등,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구
의 시설에 관해서는 국소적으로 목표수치 이상의 공간
방사선량이 측정될 경우, 사용중지 등의 잠정적인 조
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구의 직원에 의한 재측정 등을
실시해 표준수치 이상이 확인될 경우 오염제거(모래
교환, 세정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음용수 및 식품에 관한 내용

▶ 生活衛生課 (環境衛生 食品衛生)
생활위생과 (환경위생 식품위생)

☎ 3919-0376

■ 구립 보육원의 대응

▶ 保育課 保育係
보육과 보육계

☎ 3908-9127

■ 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대응

▶ 学校支援課 学校支援係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계

☎ 3908-9293

■ 아동관의 대응

▶ 子育て支援課 次世代育成係
육아지원과 차세대육성계

☎ 3908-9097

■ 공원 및 아동놀이터의 대응

▶ 道路公園課 公園河川係
도로공원과 공원하천계

☎ 3908-9275

○ 문의처

■ 방사선 측정

▶ 環境課 環境規制調査係
환경과 환경규제조사계

☎ 3908-8611

■ 방사선에 관한 건강상담

▶ 保健予防課 結核感染症係
보건예방과 결핵감염증계

☎ 3919-3102

▶ 健康いきがい課 王子健康相談係/赤羽健康相談係/
滝野川健康相談係

건강이키가이과 오우지건강상담계

☎ 3908-9087

아카바네건강상담계

☎ 3903-6481

타키노가와건강상담계

☎ 3915-0186

